

|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2205126     |
| 의 퇴 인 | 조정훈 의원      |
| 회 답 일 | 2024.11.13. |
| 추계번호  | 24C4729     |

#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**국회예산정책처**  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## I. 비용추계 결과

□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을 공제사업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경비를 재정으로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5억 6,000만원(연평균 1억 1,200만원)으로 추계

- 개정안의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이며,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[표 1]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5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 합 계 | 연평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|
| 대안교육기관 설립·운영자 등의 책무 등<br>(안 제3조의2 등) | 60   | 121  | 124  | 126  | 129  | 560 | 112 |

주: 1) '24년 기준 대안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의 공제보험료를 지원할 경우를 가정

2) '25년의 경우 6개월분의 경비만을 산정한 것임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 II. 재정수반요인<sup>1)</sup>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3조의2<br>(대안교육기관 설립·운영자 등의 책무) | 대안교육기관 설립·운영자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발생한 생명·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| 의무규정 |
| 2  | 안 제10조의2<br>(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)       | (제1항)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제2항)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
1) (안 제20조의2) 대안교육기관의 법령 등의 준수, 지원경비 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·감독 등 안 제20조의 2의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이 신설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본 추계서에서는 기존 관련 조직에서 해당 업무를 실시한다고 보아 추계에서 제외하였음

### 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#### 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추계여부 | 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3조의2<br>(대안교육기관 설립·운영<br>자 등의 책무) | ○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  | 안 제10조의2<br>(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)           | ×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,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필요한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구체적 비용추계가 곤란함</li> <li>· 참고로, 교육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시·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안교육기관의 프로그램운영비, 강사비, 교직원 인건비, 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, 구체적 지원 내역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함</li> </ul> <p>※[붙임] 대안교육기관 지원현황 (2024.4.1.기준)</p> |

#### 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□ 안 제3조의2에 따라 발생하는 공제사업 가입에 필요한 경비를 안 제10조의2에 따라 지원하는 것을 가정할 때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하며, 이외에 안 제10조의2에 따라 추가로 실시될 경비 지원에 대해서는 구체적 비용 추정이 곤란하여 추계에서 제외함

- 2024년 현재 유치원 및 초·중·고, 특수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장 등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각 시·도 학교안전공제회를 사업자로 하는 ‘학교안전공제’에 ‘의무적’으로 가입하고 있으나,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사업자로 하는 ‘청소년활동안전공제’에 ‘임의’로 가입하고 있음
-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고려할 때<sup>2)</sup>,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행 제도인 ‘청소년활동안전공제’에의 의무가입 정책과 안 제10조의2에 따른 관련 예산

2) (...)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 가입 등의 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(이하 생략)

도 지원 가능성이 있으므로, 본 추계서에서는 의무가입시 소요되는 비용인 보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함

- 안 제3조의2는 대안교육기관의 설립·운영자로 하여금 대안교육기관의 ‘운영’과 관련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발생한 생명·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‘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’를 취하도록 하였고, 안 제10조의2는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대안교육기관 ‘운영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

○ 지원대상이 되는 대안교육기관의 공제제도 가입 학생수는 2024년 4월 1일 기준 시·도교육청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 학생 현원인 11,371명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하며, 공제보험료는 2024년 기준 학생 1인당 10,260원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함

- 대안교육기관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의무교육기관이 아니며, 재학인원 역시 유동적이므로, 본 추계서에서는 2024년 4월 기준 대안교육기관의 현원을 공제보험료 지원대상으로 보며, 해당 인원이 추계기간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<sup>3)</sup>
- 다만, 개정안 시행 이후 공제에의 가입 학생수 등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며, 이 경우 추가재정소요 역시 변경될 수 있음
- 공제보험료는 2024년 기준 청소년활동안전공제의 보험료인 10,260원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함

□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임을 고려하여,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

○ 2025년은 6개월에 대해서만 추정함

### 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□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지원 대상 학생수에 공제보험료를 곱하여 추가재정소요를 도출하며,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5억 6,000만원(연평균 1억 1,200만원)으로 추계됨

3) 해당인원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아닌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수임(자료: 2024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)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원, 백만원)

|                    | 2025   | 2026   | 2027   | 2028   | 2029   | 합 계 | 연평균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|--------|
| 공제보험료(A, 원)        | 10,475 | 10,685 | 10,899 | 11,117 | 11,339 | —   | 10,903 |
| 학생수(B, 명)          | 11,371 | 11,371 | 11,371 | 11,371 | 11,371 | —   | 11,371 |
| 추가재정소요(C=A×B, 백만원) | 60     | 121    | 124    | 126    | 129    | 560 | 112    |

주: 2025년의 경우 6개월분의 경비만을 산정한 것임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 IV. 부대의견

- 2024년 기준 대안교육기관 학생 현원에 대하여 공제보험료를 지원할 경우 소요비용을 추계한 것이며, 실제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수와 공제보험료에 따라 결과값은 변경될 수 있음

## V. 작성자

-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사회비용추계과 | 정혜승 | 이진우 |

-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    |
| 정혜승 | 02-6788-4627 | hs0387@assembly.go.kr |

# [붙임] 대안교육기관 지원현황

(2024.4.1.기준)

| 시도 | 시·도교육청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반 지자체     |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   | 예산(천원)    |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| 예산(천원)     | 내용                |
| 서울 | 6,103,218 | 프로그램운영비, 강사비, 교직원 인건비, 급식비 | —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부산 | 180,000   | 프로그램운영비, 강사비               | 383,520    | 급식비               |
| 대구 | 86,590    | 프로그램운영비, 강사비               | —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인천 | 340,300   | 프로그램운영비, 강사비, 급식비          | —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광주 | 1,290,520 | 프로그램운영비, 강사비, 급식비          | —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대전 | 27,000    | 프로그램운영비                    | 90,000     | 급식비               |
| 울산 | 37,832    | 프로그램운영비, 강사비, 급식비          | —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세종 | 4,000     | 프로그램운영비, 급식비               | —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경기 | 580,400   | 프로그램운영비, 강사비               | 9,785,916  | 급식비, 교복비, 프로그램운영비 |
| 강원 | 48,993    | 프로그램운영비                    | 257,000    | 급식비, 프로그램운영비      |
| 충북 | 111,912   | 프로그램운영비                    | 74,412     | 급식비               |
| 충남 | —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35,453    | 급식비               |
| 전북 | 135,000   | 프로그램운영비, 강사비, 교재비          | 112,500    | 급식비               |
| 전남 | 350,000   | 프로그램운영비, 강사비               | 966,000    | 급식비               |
| 경북 | 85,000    | 프로그램운영비, 강사비               | —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경남 | 18,000    | 프로그램운영비, 강사비               | 15,110     | 급식비               |
| 제주 | 171,521   | 프로그램운영비, 강사비, 교재비          | 184,798    | 친환경 급식비           |
| 합계 | 9,570,286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2,304,709 |                   |

주: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시·도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  
 자료: 교육부